

<p>②(사용 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888</td> <td style="padding: 2px;">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2001년 6월 26일 상정 ·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가. 개정이유          “맹인”이라는 용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시립 맹인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시립맹인복지회관”的 명칭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함.</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석수)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맹인”이라는 용어를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시립맹인복지회관”的 명칭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맹인을 법적 용어인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표기로 생각하며, 또한 복지관이 소재한 지역명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은 유사시설과의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p>	의안 번호	888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 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889</td> <td style="padding: 2px;">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2001년 6월 26일 상정 ·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가. 개정이유          의약품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수수료에 부응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이 개정 · 시행(2001.1.18, 보건복지부령 제187호)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우리 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 시험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검사 · 시험 분야 및 항목을 정비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검사 · 시험항목 등에 대한 수수료 조정          (안별표 1)          ○ 보건복지부령 수수료 준용 : 238건          ○ 행정자치부 원가분석요령에 의한 수수료 재산정 : 1건          ○ 검사 · 시험항목 신설로 인한 수수료 책정 : 2건          ※ 현행 조례에 의한 수수료 유지 : 132건      (2)검사 · 시험항목 신설, 통 · 폐합 및 정비 · 보완(안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20개 분야 32개 세부분야 424개 검사 · 시험 항목 (현행)</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15개 분야 26개 세부분야 373개 검사 · 시험 항목 (개정)</td> </tr> </table>	의안 번호	889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20개 분야 32개 세부분야 424개 검사 · 시험 항목 (현행)	15개 분야 26개 세부분야 373개 검사 · 시험 항목 (개정)
의안 번호	888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의안 번호	889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20개 분야 32개 세부분야 424개 검사 · 시험 항목 (현행)									
15개 분야 26개 세부분야 373개 검사 · 시험 항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의 시험분야 중 의료 용구의 검사·시험항목을 용품별에서 시험 종류별로 변경하여 정함.</li> <li>○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 전염병 병원체 검사는 전염병 예방법령에 의하여 민원검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시험·검사항목에서 삭제</li> <li>○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분야는 포괄적 으로 규정한 기타시험 항목에서 시험성분의 세분화 등에 따라 개별항목으로 분리 신설함.</li> <li>○ 수수료가 동일하나 개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중 유사항목은 단일항목으로 통·폐합</li> </ul> <p>(3)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수수료 조정 (안 별표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령 수수료 준용 : 2건</li> <li>○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안 제1조)</li> </ul>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석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의약품 및 식품 등에 대한 변화된 시험수요에 대응하고, 본 조례가 참고로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이 2001년 1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수수료를 이에 맞게 현실화하고, 검사·시험분야와 항목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임.</li> <li>○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검사·시험항목을 현재 20개 분야 424개 항목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여 5개 분야 51개 항목이 줄어든 15개 373개 항목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임.</li> </ul> <p>이 중 보건분야 241개 항목 중 238개 항목은 보건복지부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에 준하여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원가분석요령에 의한 수수료 재산정 1건(레지오넬라 - 냉각탑수 검출균) 및 서울시자체 항목신설 2건(폐류의 마비성 패독 검사, 냉동참치·냉동 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 시험) 등 241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나머지 환경분야 132</p>	<p>개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은 14개 시·도에 관련되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그리고 불합리한 시험 검사항목을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체계를 재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대폭 인상조정함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이 아닌 한정된 시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li> <li>○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시험 및 검사 수수료가 인상 조정될 경우, 평균 367%가 인상되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약 2억 3천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고 연간 약 4억 5천만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li> </ul> <p>4. 질의 및 답변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5. 토론요지</li> <li>○ 없음</li> <li>6. 심사결과</li> <li>○ 원안가결</li> <li>7. 소수의견의 요지</li> <li>○ 없음</li> <li>8. 기타 필요한 사항</li> <li>○ 없음</li> </ul>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의 주관국(과) 보 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관중 “시립맹인복지회 관”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